

의안번호	2210965
의 퇴 인	박희승 의원
회 답 일	2025. 6. 30.
추 계 번호	25C333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6,576억원(연평균 3,31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(안 제100조의6)	2,445	2,825	3,258	3,747	4,302	16,576	3,315

주: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지원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5(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)	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0조의5(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)	○	○ 2021~2024년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 지원 개월 수와 평균 통상임금액을 적용하여 추계
 -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,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
 - 안 제100조의5제2항은 연금보험료 지원 시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향후 결정될 산정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 - 2021~2024년의 육아휴직급여 총 지원 개월 수와 평균 통상임금액 추이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2] 2021~2024년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

(단위: 개월, 백만원, %)

구 분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해당연도 총 지원 개월 수	1,193,637	1,432,416	1,346,124	1,379,222	4.9
평균 통상임금액	2.70	2.81	2.91	3.09	4.6

주: 안 제18조·제19조·제100조의5·제100조의6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추계결과, 국가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6,576억원(연평균 3,31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연간 총 지원 개월 수(개월, A)	1,518,711	1,593,660	1,672,308	1,754,837	1,841,439	—	—
평균 통상임금액(백만원, B)	3.4	3.5	3.7	3.9	4.1	—	—
보험료율(% , C)	10.0	10.5	11.0	11.5	12.0	—	—
추가재정소요 (억원, $A \times B \times C \times 50\%$)	2,445	2,825	3,258	3,747	4,302	16,576	3,3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통상임금액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으로, 안 제100조의5제2항은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향후 결정될 산정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